

# 2024년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FTA협정 원산지 관리와 활용에 애로가 있는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FTA특혜관세활용 관세절감 통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4년도 FTA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30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 1 모집개요

- 지원품목 : 신선 농축산물, 가공식품 \* 단, 수산물 및 수산식품 제외
  - 농식품 수출통계 AG-HS코드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품목(붙임 참조)
- 지원대상 : 농식품 직접 또는 간접 수출실적 보유기업
  -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당해년도에 체결한 수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FTA원산지 증명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최대 20일까지 무료 지원
- 지원규모 : 연간 총130업체 \* 지원 규모 초과 시 조기 신청 마감될 수 있음
- 신청기한 : 연중 수시 접수 (신청 마감일 : '24. 10. 31(목)까지)

## 2 지원개요

### □ 세부 지원내용

- ① (FTA수출활용 1:1 맞춤지원)<sup>필수</sup> 공사가 지정한 전문 관세사가 1:1 밀착지원
  - 지원신청시 아래 5개(기본 포함) 유형별 자율 선택 가능(최대 20일)

구분	컨설팅 내용 (최대 20일)	투입일수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전진단 컨설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업별 수출현황, HS품목 분류, 관세 실익분석, 원산지 관련 서류확인, 자율선택 항목 컨설팅 진단, 기업특화 매뉴얼 제공 등</li></ul></li><li>* 기본 5개 품목 3M/D 기준, 추가 시 최대 11품목</li></ul>	3~6일 (M/D)
자율 선택	① 원산지 증명서 발급대행 지원	2~3일
	② 원산지 확인서 발급대행 지원	1~2일
	③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FTA-Agri, FTA Korea 등) 지원	2~3일
	④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3~4일
	⑤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총3개사 지원) * 최근년도 농식품 수출실적 1.5백만불 이상 대상	10~20일

\* 필수 컨설팅(3M/D)은 추가 품목 2개당 1M/D 추가, 최대 3M/D까지 수행 가능

\* 품목은 HS 코드 6단위 기준 / 지원업체 FTA활용 역량수준별 기본단계 생략 가능

\*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지원은 지원업체 원산지 증명능력 등 역량수준 감안 수행가능 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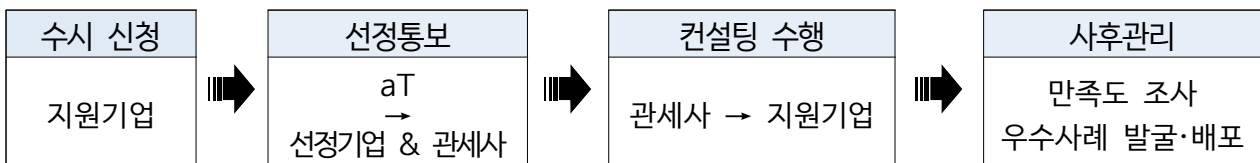
- ② (수출안전망 보험지원)<sup>선택</sup>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대비 2만달러 이내 1년 보장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 수출 초보기업 대상 무료 지원
  - \* 보험가입 희망 동의업체 한해 무역보험공사에 일괄 가입, 중복 가입시 지원 제외
  - \* 최종 가입업체 대상 보험증서는 이메일로 별도 발송

### 3 신청접수 및 선정기준

-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 통한 온라인 접수
- 로그인(신규업체는 회원가입 필요) → 사업신청 → ‘2024년 FTA 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 공고 선택 → 사업신청 양식 다운로드 →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사업자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구분	제출 서류 목록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서(동의서 포함) 및 회사(상품)소개서 각 1부</li> <li>•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Trass)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s://global.at.or.kr">global.at.or.kr</a> → 자주 찾는 서비스 → 무역통계동의서 제출 바로가기</li> </ul> </li> <li>• aT ‘One Pass(원패스)’을 통해 행정기관 증명서류 한번에 간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제출하였다도 공인인증서 통해 최신년도 증명 제출 필요</li> <li>-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 금액증명원), 국세 납입증명, 지방세 납입증명</li> </ul> </li> </ul>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수출)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TRASS)시 제출시 동의 불필요</li> <li>• (간접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 증빙서류</li> <li>• (수출예정) 지원사업 신청 당해년도에 체결한 수출계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항목 증빙 (아래 기타사항 참조)</li> </ul>

- 선정기준 : 상기 제출 증빙서류 토대로 검토후 접수일자 기준 순차 선정
- 정보제공 및 사업 미동의, 제출서류 미비로 컨설팅 지연, 선정 제외 등 가능



□ 문의처

- aT수출기업육성부 ☒ [atconsulting@at.or.kr](mailto:atconsulting@at.or.kr) ☎061-931-0867

## 4 기타 사항

### □ (만족도 조사협조) FTA 컨설팅 지원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컨설팅 종료 이후 외부 조사 전문기관 통해 설문 발송 예정

###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선정 이후에도 신청 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를 받은 기업
- 타 지원기관의 유사 사업(FTA 컨설팅 등)에 선정되어 중복 신청하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당해년도 aT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의 선정업체
- 당해년도 aT수출 현장코칭 지원사업의 법률상담 분야중 관세사와 매칭하여 중복지원 불가
- 수행 컨설팅사 또는 지원기업과 특수관계인인 경우

### □ (가점부여 인증 대상) 유효기간 이내 증명 제출 요망

배점	가점 대상
2점	농식품 국가인증마크 취득업체(유기인증, GAP, 지리적 표시, 이력추적, 전통식품, 기술 품질인증 등), 우수문화상품(K-Ribbon Selection), HACCP, ISO, GMP 등 시설품질 인증업체, 6차산업, 농공상융합기업, 할랄 인증
3점	여성기업,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계약재배, 농공단지 입주기업, 신선농산물 수출희망업체, 국산원료 사용업체 (품목 제조보고서 제출 등)
5점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마을기업(행안부) 등], 장애인 기업,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사업자 대표자 기준)



## 참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 □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 인증수출자의 종류

구분	① 업체별 인증수출자	② 품목별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 세관	

### □ 인증수출자 종류별 혜택 (단, 협정에 따라 혜택 상이)

구분	① 업체별 인증수출자	②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 능력 보유</li> <li>•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li> <li>•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li> <li>•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li> <li>•최근 2년간 서류보관 의무 위반 無</li> <li>•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품목(HS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li> <li>•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li> <li>•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li> </ul>
혜택범위	전체 협정, 전체 품목	인증 심사받은 협정, 인증품목(HS6단위)
인증혜택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 서류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모든 협정에 적용)	품목별 인증을 통해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 서류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인증 협정에만 적용)

### □ 인증수출자 협정별 혜택

협정	인증 이전	인증 이후
한-EU 한-영	•6천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가능	•6천유로 초과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li> <li>•첨부서류 제출(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확인서, 그밖의 증빙자료)</li> <li>•현지확인(필요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li> <li>•첨부서류 제출 생략</li> <li>•현지확인 생략 가능</li> </ul>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서) 수출자의 서명 필요(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서) 수출자의 서명 생략(전자문서 이용 가능)
RCEP 한-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 부여</li> <li>•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li> </ul>
한-이스라엘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화 1천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자율증명 방식 활용 가능</li> <li>•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시 첨부서류제출 생략</li> </ul>
기타	동제도 미적용	



RCEP 인증수출자  
취득으로 한국산  
과일의 FTA  
수출영토를 넓히다



**DAEMYUNG FARMS**  
과일, 자연 그대로

대표명 이 동 환  
설립일 2012. 12. 12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626, (반여동,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2층 사무실 30호)  
대표번호 051-727-8895  
홈페이지 www.dmfruit.co.kr  
수출품목 산선과일

**기업소개**

국내외의 산선과일을 수입 및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과일에 대한 특장 및 품질에 대한 지식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품목별 수출에 대한 품위 및 품질 관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으로 아시아를 넘어 다양한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원동기**

샤인머스켓을 중국으로 첫 수출하게 되면서 수입, 수출을 병행하여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그 후 품목을 늘려가면서 동남아시아 등 수출국가도 다양해졌습니다. 과일 품목과 수출 국가가 확장됨에 따라 품목별, 나라별로 필요한 서류도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전문 수출컨설팅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대명팜스**

수출 컨설팅 지원성과

FTA 특혜관세활용지원

**공사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인증을 빠르게 해결**

FTA 특혜관세지원사업을 통해 비교적 단시간 내에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총12건의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원산지소명서 등의 원산지 제반 서류구비 제출에 도움을 받았으며, 수출 품목에 대해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인증 보유로 원산지증명 발급이 더욱 간소화 되었습니다.

**신규발효 협정 RCEP활용 무관세 수출 가능**

포도, 배, 단감, 딸기 품목에 대해 RCEP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이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체계적으로 원산지 제반 서류를 관리하는 실무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확인서 대체인증서류로 FTA 쉽게 활용하기]

 GAP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발 급확인서
--	--	---	---	---

인증 취득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총 12건

수출 성과



RCEP 활용 효과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되어 바이어와  
거래에 날개를 달다



**대표명** 김진태  
**설립일** 1999. 7. 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64번길 21  
**대표번호** 042-624-1181  
**홈페이지** www.aramfood.co.kr  
**수출품목** 떡볶이, 식혜

**기업소개**

대한민국 전통 음료인 식혜와 수정과 및 가정간편식 떡볶이 등의 다양한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HACCP, ISO22000, FSSC22000, KMF 할랄 인증 등 국내외 각종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FDA 공장 및 시설등록을 완료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1999년 설립 이후로 국내시장에서 꾸준히 입지를 다져왔으며 2019년 첫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2019년 10,746달러, 2020년 63,481달러의 수출 실적을 이뤄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원동기**

다양한 국가에 수출을 해오면서 수출 과정 동관절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동관 시각국의 세관은 원산지 증명을 요청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져 있는 국가는 원산지 증명을 통해 관세를 매우 많이 낮출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의 기초 상식과 인증수출자 발급을 위해 신청했습니다.

**(주)아람**

수출 컨설팅 지원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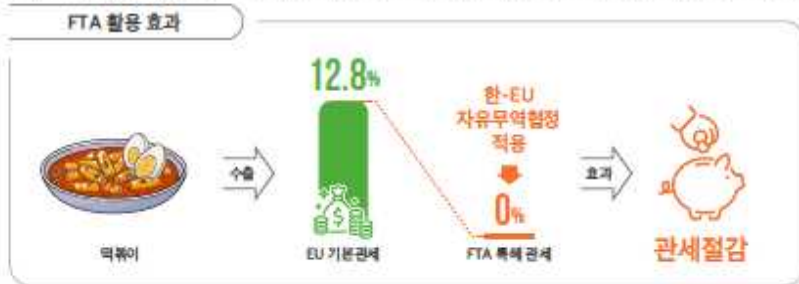
FTA 특혜관세활용사업

**FTA 활용 수출 실무 역량 강화**

전문관세사의 FTA 전반에 대한 실무 교육과 한-미 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지원을 통해 수출 품목의 통관 업무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많았던 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담당 관세사의 도움을 통해 떡볶이 및 식혜 수출 시의 협정별 관세 실의, 수출물품의 원산지 국내산 입증 방법,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제도 등에 관한 프로세스를 교육받아 실무 업무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쌀가루 완전생산 입증으로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총 6건**

FTA 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을 통해 어렵고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FTA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으며 떡볶이와 식혜 등의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FTA를 활용한 관세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도 높아졌고 인증수출자 취득 후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향후 바이어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4년도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 신청서

<b>1 기업현황</b>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	업태		
매출액	(`23년)	(백만원)	취급품목	예) 김치, 인삼		
수출형태	<input type="checkbox"/> 직접수출 <input type="checkbox"/> 간접수출 <input type="checkbox"/> 수출예정 (수출계약 체결로 수출예정)					
주소	본사					
	사업장					
담당자	성명		부서/직급			
	Tel		모바일			
	E-mail					
인증 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인증 <input type="checkbox"/> GAP인증 <input type="checkbox"/> 이력추적관리 등록 <input type="checkbox"/> 지리적표시 <input type="checkbox"/> 전통식품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내산 가공용 쌀공급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제주 우수제품품질인증					
기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재배·축산업 <input type="checkbox"/> 식품제조가공업 <input type="checkbox"/> 유통업체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					
<b>2 당해연도 FTA활용지원센터, 관세청, 지자체 등의 FTA 컨설팅사업 중복 수혜 여부 (중요)</b>			<input type="checkbox"/> 수혜 <input type="checkbox"/> 수혜 없음			
(위 항목의 수혜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수혜 내역과 다른 사유 작성 (품목 또는 국가)						
<input type="checkbox"/>						
<b>3 사업신청 사유 및 경로</b>						
<b>4 FTA 컨설팅 희망 항목 및 품목</b>						
기본 필수	FTA 기본 컨설팅 (HS기준 기본 5개 품목이며, 최대 11품목까지 컨설팅 가능) - HS CODE 분류, 관세 실익 분석, 원산지 관리 교육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①	원산지 증명서 발급	<input type="checkbox"/>	선택④	품목별 인증수출차 취득 지원	<input type="checkbox"/>	
선택②	원산지 확인서 발급	<input type="checkbox"/>	선택⑤	업체별 인증수출차 취득 지원	<input type="checkbox"/>	
선택③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지원	<input type="checkbox"/>		*최근년도 농식품 수출실적 1.5백만불 이상 대상으로 연간 목표수, 기업역량 감안 지원 여부 결정		
컨설팅 희망품목 (HS코드 6단위 기준 최대 11개 품목)	1	품명 기재	HS CODE 6단위	7	품명 기재	HS CODE 6단위
	2	품명 기재	HS CODE 6단위	8	품명 기재	HS CODE 6단위
	3	품명 기재	HS CODE 6단위	9		
	4			10		
	5			11		
	6					
<b>5 수출 목표국가 (FTA 협정국 대상 기재 요망, 협정국가 조회방법 <a href="#">바로가기 링크</a>)</b>						
주요 수출 국가 (수출예정 포함)	1		2	3		
	4		5	6		
<b>선택 항목 [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가입 희망 여부 ]</b>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가입대상 : 전년도 직수출 USD 10만이하 신선 농축산물 또는 농식품 초보기업 - 단, 동의업체 중 선정업체에 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단체 가입의뢰 ■ 보험내용 : 연간 최대 US\$2만 이내 수출대금 미회수 보장 / ■ 보험기간 : 1년 / ■ 비용 : 무료 ( <a href="https://www.ksure.or.kr/rh-kr/cntnts/i-144/web.do">https://www.ksure.or.kr/rh-kr/cntnts/i-144/web.do</a> → 단체보험 소액한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24년도 FTA특혜관세 활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제재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지원기업 업체명 :			대표자 :			
			(인)			
<b>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귀중</b>						
※ 제출서류 : (공 통)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회사(상품)소개서 (직접수출)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로 대체 (수출예정) 지원사업 신청 당해년도 체결한 수출계약서 (간접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 증빙서류						



# 공사 지원사업 동의서

본 동의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가 시행하는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에 참가 신청하는 업체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지원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

## 제1조(사업목적)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은 전문 관세사가 수출업체의 기업역량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FTA협정 활용 관세절감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자격 및 제한)

- ①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공고문의 지원대상 및 지원 품목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2.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중인 기업
  3. 타 지원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된 기업
  4.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기업
  5.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6.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8. 휴·폐업중인 기업
  9. 공사 사업대행 용역사과 특수관계인인 기업

## 제3조(등록신청 및 신청취소)

- ①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는 직접 공사의 수출종합지원 시스템(global.at.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② aT는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기한 내 원본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참여제한 및 법적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공사의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휴일 포함)을 초과하여 지원업체로부터 응답이 없을 경우, 공사는 지원 신청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4조(참여제한)

- ① aT는 지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공사 사업대행 용역사와 지원업체의 사업신청, 수행절차, 결과확인 등을 대리한 경우
  2. 공사 사업대행 용역사와 지원업체 간 부당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공공재정 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제5조(산출물 및 만족도 조사 협조)**

- ①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 관련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aT에 귀속된다.
- ②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업체는 aT의 사업홍보, 업계 공유 등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 ③ 지원업체는 aT의 만족도 조사 등 컨설팅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신의성실 및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 ① 지원업체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컨설팅을 지원받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원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 등 법령에 의거 공사 사업대행 용역사 직원에게 폭언, 폭행, 허위 불만제기 등 업무방해, 성희롱,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7조(청렴서약)**

- ② 지원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사업대행 용역사에게 금품·향응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공공재정 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8조(기타사항)**

- ① 제3조 제3항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T 사업담당자는 해당업체의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IP 접속기록 및 활동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지원사업 동의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시행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른다.
- ③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법령 등 지원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문제 발생 시 aT는 국가 수사기관에 의뢰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4. . .

지원업체명 : (인)

대표자 : (인 또는 서명)